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1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하부조직 중 감염병대응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중 “기획총괄담당관·조직총괄담당관·조직관리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계획예산총괄담당관·인력운영예산담당관·전력유지예산담당관·재정회계담당관·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데이터정책담당관·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을 “기획총괄담당관·조직총괄담당관·조직관리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재정계획담당관·예산편성담당관·예산운영담당관·재정회계담당관·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데이터정책담당관·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으로, “기획총괄담당관·조직총괄담당관·조직관리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계획예산총괄담당관·인력운영예산담당관·전력유지예산담당관·재정회계담당관·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및”을 “기획총괄담당관·조직총괄담당관·조직관리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재정계획담당관·예산편성담당관·예산운영담당관·재정회계담당관·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획예산총괄담당관”을 “재정계획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

다.

1.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수립
2. 중장기 국방 가용자원(可用財源)의 판단 및 배분
3. 국방중기계획의 종합·조정 및 수립
4.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5. 국방부 총사업비 대상사업 관리
6. 재정운용 효율화 관련 제도운영
7. 국방재정 개혁 과제 수립 및 추진
8.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발전
9. 전력운영비(급여정책, 급식 및 피복, 장병보건 및 복지, 군 인사 및 교육 훈련, 예비전력관리,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 책임 운영기관 및 군책임운영기관, 국방정보화, 군수지원 및 협력,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의 분석·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제4조의2제1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력운영예산담당관”을 “예산편성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력운영부문”을 “전력운영비”로, “군책임운영기관) 중기 계획 수립 및”을 “군책임운영기관, 국방정보화, 군수지원 및 협력,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관련 업무

제4조의2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력유지예산담당관”을 “예산운영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예산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2. 예산 배정계획의 수립 및 세출 예산의 재배정
3. 예산 당겨배정 및 수시배정
4. 예산 과부족 소요예산 충당 지원
5.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입·세출 결산의 종합 및 분석
7. 국회 결산심사 관련 업무 총괄
8. 통합재정사업 평가 관련 업무
9. 외화 사용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10. 전군(全軍) 재무관 소관 업무
11. 전력운영비 집행잔액 재사용 및 부족예산 조치

제9조제6항 중 “정책기획과·국방전략과·북한정책과·군비통제비확산 정책과·교육훈련정책과·정신전력문화정책과·국제정책과·미국정책과·동북아정책과·국제평화협력과·다자안보정책과·방위정책과·북핵대응정책과·미사일우주정책”을 “정책기획과·국방전략과·북한정책과·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교육훈련정책과·정신전력정책과·국제정책과·미국정책과·동북아정책과·국제평화협력과·다자안보정책과·

방위정책과·북핵대응정책과·미사일우주정책”으로, “국방전략과장·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국제정책과장·동북아정책과장·국제평화협력과장·다자안보정책과장”을 “국방전략과장·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정신전력정책과장·국제정책과장·동북아정책과장·국제평화협력과장·다자안보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을 “정신전력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5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8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국방분야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집행·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1조제3항 중 “2024년 3월 31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한다.

국방부령 제110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78”을 “672”로 하고, 일반직 계 “670”을 “664”로 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방호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5”를 “213”으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방호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4”를 “16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방호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75”를 “74”로 하고, 행정서기·방호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위생서기 “55”를 “54”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6”을 “2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80”을 “674”로 하고, 일반직 계 “672”를 “66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방호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7”을 “215”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방호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4”를 “16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방호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75”를 “74”로 하고, 행정서기·방호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위생서기 “55”를 “54”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6”을 “25”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4”를 각각 “72”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13”을 “12”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

기·전산서기·운전서기 또는 위생서기 “10”을 “9”로 한다.

별표 6 1. 군공항이전사업단(존속기한: 2024년 1월 30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공항이전사업단(존속기한: 2026년 1월 30일)

별표 7 중 3. 제21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3월 31일) “2024년 3월 31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⑤ (생 락)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u> <u>담당관 · 조직총괄담당관 · 조직</u> <u>관리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u> <u>계획예산총괄담당관 · 인력운영</u> <u>예산담당관 · 전력유지예산담당</u> <u>관 · 재정회계담당관 · 지능정보</u> <u>화기획담당관 · 데이터정책담당</u> <u>관 ·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u> 및 소프트웨어융합팀장 각 1명 을 두며, <u>기획총괄담당관 · 조직</u> <u>총괄담당관 · 조직관리담당관 ·</u> <u>혁신행정담당관 · 계획예산총괄</u> <u>담당관 · 인력운영예산담당관 ·</u> <u>전력유지예산담당관 · 재정회계</u> <u>담당관 ·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u> 및 데이터정책담당관은 부이사 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 관으로,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 관은 영관급장교로, 소프트웨어 융합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⑥ ----- <u>기획총괄담</u> <u>당관 · 조직총괄담당관 · 조직관</u> <u>리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재</u> <u>정계획담당관 · 예산편성담당관</u> <u>· 예산운영담당관 · 재정회계담</u> <u>당관 ·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u> <u>데이터정책담당관 · 정보통신기</u> <u>반정책담당관</u> ----- ----- ----- <u>기획총괄담당관 · 조직</u> <u>총괄담당관 · 조직관리담당관 ·</u> <u>혁신행정담당관 · 재정계획담당</u> <u>관 · 예산편성담당관 · 예산운영</u> <u>담당관 · 재정회계담당관 · 지능</u> <u>정보화기획담당관</u> 및 ----- ----- ----- ----- ----- ----- ----- ----- ----- -----

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
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
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
한다.

⑦ ~ ⑩ (생략)

⑪ 계획예산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신설>

2. (생략)

<신설>

4. 예산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
립·운영 및 통제

5. 예산 배정계획의 수립 및 세
출 예산의 재배정

6. 예산 당겨배정 및 수시배정

7. 예산 과부족 소요예산 충당
지원

8.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
비 운영에 관한 사항

9. 세입·세출 결산의 종합 및
분석

-----.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재정계획담당관-----

-----.

1.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수립

2. 중장기 국방 가용재원(可用
財源)의 판단 및 배분

10. (현행 제2호와 같음)

3. 국방중기계획의 종합·조정
및 수립

4.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5. 국방부 총사업비 대상사업
관리

6. 재정운용 효율화 관련 제도
운영

7. 국방재정 개혁 과제 수립 및
추진

8.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
발전

9. 전력운영비(급여정책, 급식
및 피복, 장병보건 및 복지, 군

	<u>인사 및 교육 훈련, 예비전력 관리,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 책임운영기관 및 군책임운영기관, 국방정보화, 군수지원 및 협력,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의 분석·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u>
10. <u>국회 결산심사 관련 업무 총괄</u>	<삭 제>
11. <u>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통합재정사업 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업무</u>	<삭 제>
12. <u>외화 사용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u>	<삭 제>
13. <u>전군(全軍) 재무관 소관 업무</u>	<삭 제>
14. 삭 제	
15. · 16. (생 략)	11. · 12. (현행 제15호 및 제16호와 같음)
⑫ <u>인력운영예산담당관</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⑫ <u>예산편성담당관</u>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인력운영부문</u> (급여정책, 급식 및 피복, 장병보건 및 복지, 군	5. <u>전력운영비</u> ----- -----

인사 및 교육 훈련, 예비전력
관리,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 책임운영기관
및 군책임운영기관)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6. 인력운영부문 집행잔액 재사
용 및 예산 이용·전용, 부족
예산 조치 검토

7. 군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수립

8. 삭 제

<신 설>

⑬ 전력유지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수립

2. 중장기 국방 가용자원(可用
財源)의 판단 및 배분

3. 국방중기계획의 종합·조정
및 수립

4.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5. 국방부 총사업비 대상사업

-- 군책임운영기관, 국방정보
화, 군수지원 및 협력, 군사시
설 건설 및 운영) -----

--

<삭 제>

<삭 제>

9.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관련 업무

⑬ 예산운영담당관-----

-----.

1. 예산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
립·운영 및 통제

2. 예산 배정계획의 수립 및 세
출 예산의 재배정

3. 예산 당겨배정 및 수시배정

4. 예산 과부족 소요예산 충당
지원

5.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

<u>관리</u> 6. 재정운용 효율화 관련 제도 운영 7. 전력유지부문(국방정보화, 군수지원 및 협력,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8. 전력유지부문 집행잔액 재사용 및 예산 이용·전용, 부족예산 조치 검토 9. 국방부 소관 특별회계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10. 국방재정 개혁 과제 수립 및 추진 11.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발전 12.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3. 전력운영 분야의 분석·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⑭ ~ ⑰ (생략)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⑤ (생략) ⑥ 국방정책실장 밑에 정책기획과·국방전략과·북한정책과·	<u>비 운영에 관한 사항</u> 6. 세입·세출 결산의 종합 및 분석 7. 국회 결산심사 관련 업무 총괄 8. 통합재정사업 평가 관련 업무 9. 외화 사용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10. 전군(全軍) 재무관 소관 업무 11. 전력운영비 집행잔액 재사용 및 부족예산 조치 <삭 제> <삭 제> ⑭ ~ ⑰ (현행과 같음)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정책기획과·국방전략과·북한정책과·군
---	--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 교육훈련정책과 · 정신전력문화정책과 · 국제정책과 · 미국정책과 · 동북아정책과 · 국제평화협력과 · 다자안보정책과 · 방위정책과 · 북핵대응정책과 · 미사일우주정책과 및 사이버전자기정책과를 두며, 정책기획과장 · 북한정책과장 · 교육훈련정책과장 · 미국정책과장 · 방위정책과장 · 북핵대응정책과장 및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국방전략과장 ·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 ·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 국제정책과장 · 동북아정책과장 · 국제평화협력과장 · 다자안보정책과장 및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 ⑪ (생략)

⑫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

⑬ ~ ⑳ (생략)

제11조(자원관리실) ① ~ ⑭ (생략)

비통제비확산정책과 · 교육훈련정책과 · 정신전력정책과 · 국제정책과 · 미국정책과 · 동북아정책과 · 국제평화협력과 · 다자안보정책과 · 방위정책과 · 북핵대응정책과 · 미사일우주정책---

----- 국방전략과장 ·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 · 정신전력정책과장 · 국제정책과장 · 동북아정책과장 · 국제평화협력과장 · 다자안보정책과장 -----

-----.

⑦ ~ ⑪ (현행과 같음)

⑫ 정신전력정책과장-----
-----.

1. ~ 15. (현행과 같음)

⑬ ~ ⑳ (현행과 같음)

제11조(자원관리실)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9. 삭제 10. <u>국방분야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집행·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11. <u>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u> 12. ~ 14. 삭제 15. ~ 21. (생략) ⑯·⑰ (생략) <18> 군주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u><신설></u> <u><신설></u> ⑱ (생략) 제21조(한시정원) ① (생략) ② 삭제 ③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	⑮ ----- -----. 1. ~ 7.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15. ~ 21. (현행과 같음) ⑯·⑰ (현행과 같음)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국방분야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집행·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13. <u>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u> ⑱ (현행과 같음) 제21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③ ----- -----
---	--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u>	----- <u>2026</u>
<u>4년 3월 31일</u> 까지 별표 7에 따	<u>년 3월 31일</u> -----
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

신 · 구 정원 대비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u>678</u>	· <u>672</u>		-6
일반직 계	·		·		·		
	·		·	<u>670</u>	· <u>664</u>		-6
	·		·		·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방호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 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 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215</u>	<u>213</u>		-2
행정주사 · 사서주사 · 방호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보건주 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 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u>164</u>	<u>163</u>		-1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방호 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 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 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 통신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u>75</u>	<u>74</u>	-1
행정서기 · 방호서기 · 공업서기 · 임업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 전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 기 또는 위생서기	<u>55</u>	<u>54</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6</u>	<u>25</u>	-1
·	·	·	
·	·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680</u>	• <u>674</u>	-6
일반직 계	• • <u>672</u>	• • <u>666</u>	-6
• •	•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방호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 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 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217</u>	<u>215</u>	-2
행정주사 · 사서주사 · 방호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보건주 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 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u>164</u>	<u>163</u>	-1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방호 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 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 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 통신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u>75</u>	<u>74</u>	-1
행정서기 · 방호서기 · 공업서기 · 임업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 전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 기 또는 위생서기	<u>55</u>	<u>54</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6</u>	<u>25</u>	-1
·	·	·	
·	·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국립서울현충원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74</u>	• <u>72</u>	-2
일반직 계	<u>74</u>	<u>72</u>	-2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 보 · 운전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u>13</u>	<u>12</u>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 운전서 기 또는 위생서기	<u>10</u>	<u>9</u>	-1
•	•	•	
•	•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20조제6항, 제20조의2제7항, 제20조의3제2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6제2항 및 제20조의7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1. 군공항이전사업단(존속기한: <u>2026년 1월 30일</u>)	총 계	총 계	
•	•	•	
•	•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한시정원표(제21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3. 제21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u>2026년 3월 31일</u>) • •	• • 총계 • •	• • 총계 • •	